

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6 (02-723-0666)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4-2 일신빌딩 3층

담당변호사: 박주민 변호사(010-6310-6108)

피고발인

1. 김0학 (국가정보원 안보5팀)
2. 김진열 (국가정보원 안보5팀)
3. 이0득 (국가정보원 안보5팀)
4. 김00 (국가정보원 안보5팀)
5. 장0창 (국가정보원 안보5팀)
6. 박0애 (국가정보원 안보5팀)
7. 내지 31. 황*진 등 25명(국가정보원 안보3팀 소속 및 조력자)¹⁾

고 발 취 지

1)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판결문 195쪽~198쪽 기재(인터넷 계정 일람표)된 황*진 이하 25명(황*진, 윤*상, 이**, 이&&, 이%%, 강상구, 계재용, 김영태, 박원근, 박*학, 박혜익, 신은영, 양현정, 이승환, 이정옥, 이훈일, 정연철, 진상문, 최의환, 하수정, 하재명, 하정진, 한미원, 한운용, 황인석)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I.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지난 1994년 9월 10일 결성된 시민사회단체이며, 피고발인들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그들과 업무를 분담한 이들입니다.

II. 적용법조

1.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2. 공직선거법²⁾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III. 국가정보원 소속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1. 국가정보원법위반

피고발인1 내지 6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4. 9. 11. 선고한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만 하겠습니다)에서 인정된

²⁾ 법률 제11207호, 2012.1.17.시행

바와 같이 175개의 계정을 사용하여 국책사업 및 국정성과를 홍보함으로써 대통령 및 여당을 지지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야당 및 정치인들을 반대·비판하는 등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첨부 판결문 참조). 피고발인7 내지 31도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117개의 인터넷사이트 아이디(계정)를 사용하여 피고발인1 내지 6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첨부 판결문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발인들의 국가정보원법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되고 기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사건에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에 관여한 것은 맞으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의 본질 왜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 선거운동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술마시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궤변적 논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

울중앙지방법원이 이렇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에 관한 이러한 궤변적 결론을 도출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바라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의 본질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인식하였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국정홍보, 둘째, 국정홍보의 연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시책에 반대하고 비난하는 반대세력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의 시혜자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대상인 정치적 반대파를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으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의 본질을 '이명박 정부'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시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으로만 국한시키면 '박근혜 후보'를 위한 정치개입과 '진보·개혁진영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선거운동의 점"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요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의 본질을 위와 같이 인식한 결과 국가정보원법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위반은 무죄의 결론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의 본질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식은 실제 일어난 일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국내정치 개입의 궁극적 목표는 소위 '종북척결'이었습니다. 이 소위 '종북척결'이라는 개념이 평상시에는 '국정홍보 및 반대파 비난'의 작업으로 발현되었고, 선거 시에는 '종북좌파의 집권저지' 작업으로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선거시기에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윗·리트윗한 무수한 표현들 중 대선에 관하여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미화, 찬양하고, 민주당 등 야당과 문재인·안철수 등 야당의 대선후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저주에 가까운 조롱을 퍼부어댄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식대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의 본질을 '이명박 정부'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시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설명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선거시기에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윗·리트윗한 ①박근혜지지, 찬양형, ②박근혜 공약 선전형, ③박근혜 지지자 결집 소개형, ④야당비난형, ⑤야당후보 비난형, ⑥박근혜 후보 또는 새누리당(한나라당 포함) 업적 홍보형, ⑦새누리당 또는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발표형의 수십만 건의 자료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모두 알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이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으나, 실제로 한겨레가 2014.9.12. 보도한 바와 같이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으로 인정한 트윗·리트윗 중 선거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트윗과 리트윗이 아래와

같이 존재하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왜곡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첨부 기사 참조)³⁾.

새누리당 선거운동 참여했는데도 선거법은 무죄 법원이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다’고 인정한 트위터 계정 중 ‘gichan777’ 등 최소 8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트위터 계정 프로필 화면에 ‘십알단’이라고 표시한 채 활동하기도 했다. ‘십알단’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캠프 에스엔에스(SNS)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윤정훈(40) 목사가 운영한 ‘십자군 알바단’의 줄임말이다. 윤 목사는 “박근혜 알리기 유세단 10만명을 조직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동조하는 누리꾼들은 ‘십알단’ 표시를 한 채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지지, 야당 비방 글을 올렸다. 윤 목사는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트위터로 박근혜 후보 지지, 문재인 후보 비방 글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국정원 ‘십알단’ 계정은 “오늘 광노현 교육감직 상실로 대선 날에 2개의 선거를 동시에 한다고 한다. 이번 대선은 좌-우파 간의 싸움이 될 듯, 교육감 후보로 조국 교수가 나온다는 말도 보이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 보수는 망쳐야 한다, 망치지 않으면 둘 다 좌파들에게 빼앗깁니다”(아이디 ‘minsu_an’)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법원은 이를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관여 행위라고만 봤다. 국정원 직원이 새누리당 선거운동에 동참해 특정 후보 지지·비방 글을 올렸는데도, 이를 지시한 원 전 원장은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나. 기존 판례의 왜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의 실상을 확인하고도 공직선거법 무죄라는 결론을 내면서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9243 판결을 인용합니다. 이 판결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대표인 피고인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으로 부각된 ‘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들어 있습니다.

3) 한겨레, 2014. 9. 12. “트위터글 11만건, 선거법 위반 여부는 판단조차 안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984.html>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라든,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무상급식을 관철하는 입장을 가진 단체가 선거운동 시기에 후보자들에게 무상급식에 관한 입장을 묻고, 이에 관한 지지, 반대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것을 바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판결의 판시를 가져다가 다음과 같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을 무죄로 결론짓는데 활용합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활동이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를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처벌하면 족한 것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행위가 모두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법리(필자 주 -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9243 판결의 위 판시)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관련 사건 판결문 183쪽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판시 역시 들어 있습니다.

“공소사실 중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지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반면, 종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일 뿐 선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나머지 각 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

즉 대법원은 어떤 단체가 평상시의 정책을 선거시에 관철하고자 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런 정책에 관한 활동이라도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하 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의 본질을 '국정홍보 및 반대파 비난작업'으로 국한하여 본다고 하여도 그 정치개입활동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행위로 이어진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9243 판결 중 자기 입맛에 맞는 일부만 부분만 가져다가 인용한 것입니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피고발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1)피고발인들의 정치개입행위의 본질에 대해 왜곡하였고, 2)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왜곡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되거나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을 이제라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하고 기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다 구체적인 증거방법은 고발인 보충조사 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관련 사건 판결문
1. 2014. 9. 12.자 한겨레 기사

2014. 10. 14

고발인 참여연대 (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